

의안번호	2200191
의 퇴 인	강대식의원
회 답 일	2024.7.24.
추계번호	24E0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자녀 수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재정 수입은 2025년 2.15조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9.05조원(연평균 3.8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녀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안 제55조제1항)	-2.15	-4.86	-4.08	-4.02	-3.95	-19.05	-3.81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5조제1항(세율)	○ 자녀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 (현행) 자녀수와 무관하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제 적용→(개정안) 자녀수별로 기본세율 차등적용, 자녀가 1명인 경우 전 구간의 세율 2%p인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전 구간의 세율 3%p인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 구간의 세율 4%p인하, <table><tr><th>구 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세율</td><td>6~45%</td><td>자녀 1명: 4~43% 자녀 2명: 3~42% 자녀 3명 이상: 2~43% 그 외: 6~45%</td></tr></table>	구 분	현행	개정안	세율	6~45%	자녀 1명: 4~43% 자녀 2명: 3~42% 자녀 3명 이상: 2~43% 그 외: 6~45%	
구 분	현행	개정안							
세율	6~45%	자녀 1명: 4~43% 자녀 2명: 3~42% 자녀 3명 이상: 2~43% 그 외: 6~45%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5조제1항(자녀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 귀속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부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종합소득세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함
 - 근로소득세의 2025년 세수효과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가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 기본세율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인원수를 추정한 후, 1인당 세수효과를 곱해 최종 세수효과를 추계
 -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동 개정안 적용 대상인원 수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 신청대상인원을 기반으로 추정
 - 다만, 2019년 이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7세 이상으로 제한됨에 따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자료 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를 기반으로 6세 이하 자녀 포함한 가구를 보정

- 1인당 세수효과는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총급여(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세율 변경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 추정
 -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계
 - 다만, 2023년 소득세율 변경의 효과를 반영하여 현행 1인당 산출세액도 재추계, 2022년 귀속 1인당 과표에 2023년 기준 소득세율 및 과표구간을 반영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에서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1인당 결정세액을 추정해 1인당 세수효과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추계방법

(1) 대상 인원 수 추정

- (자녀세액공제 신청현황) 2022년 귀속기준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 124.0만명, 근로소득세 신고자 219.3만명임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일정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출산·입양공제로 구성되며,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자녀수 별로 금액 차등 지급되고, 출산·입양공제는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 둘째 등인지에 따라 차등 지급
 - 다만,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

[표 2]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단위: 명)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비고: 대상 자녀 연령
2014	1,230,187	3,724,170	20세 이하
2015	1,275,173	3,748,408	
2016	1,323,772	3,752,153	
2017	1,350,161	3,734,969	
2018	1,381,422	3,704,943	
2019	1,167,915	2,847,948	7세 이상 20세 이하 (6세 이하 제외)
2020	1,116,566	2,786,830	
2021	1,213,225	2,740,678	
2022	1,240,221	2,731,7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동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20세 이하 기본공제 적용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부터 아동수당과의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기본공제 적용대상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
 - 2023년부터 8세 이상 자녀로 변경('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2년 세법 개정)

[표 3] 자녀세액공제 연혁

자녀세액공제	내용
① (기본-다자녀공제)	('14~'18) 기본공제 적용 자녀(20세 이하) ('19~'22)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 이상인 자녀 ¹⁾ (20세 이하) ('23)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20세 이하)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24)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20세 이하)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14~'16) 1명당 연 30만원 ('17~)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③ (6세 이하 자녀공제)	('14~'17)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18~) 2018년부터 폐지 ²⁾

주: 1) 2019년 귀속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수당과 중복적용 배제

2) 2018년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중복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아동수당지급대상(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추가 적용을 폐지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6세 이하를 포함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가구수 추정) 자녀세액 공제 신청대상에 6세 이하 자녀가 제외됨에 따라,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등을 활용하여 6세 이하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수를 추정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수 대비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 비중은 2016 ~ 2018년은 87.7%였으나, 2019년 이후 6세 이하 자녀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73.2%로 하락
 - 2022년 기준 기본공제 대상 자녀(6세 이하 포함)가 있는 가구수 추정치는 411.2만명으로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수”에 2016~2018년 평균 비중(87.7%)을 적용하여 추계
 - 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 각각의 인원은 294.4만명, 116.9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인원 대비 근로소득자(중복자 제외시, 71.6%)와 종합소득자(28.4%)의 비율을 적용해 추정

[표 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비중

(단위: 명)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수 ¹⁾ , 통계청 (A)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수 ²⁾ , 국세청 (B)	(B/A, %)	비고: 대상 자녀 연령
2016	5,572,776	4,777,880	85.7	20세 이하
2017	5,432,246	4,749,664	87.4	
2018	5,272,356	4,738,215	89.9	
2019	5,077,047	3,711,404	73.1	7세 이상 20세 이하 (6세 이하 제외)
2020	4,948,549	3,601,760	72.8	
2021	4,827,184	3,555,605	73.7	
2022	4,690,686	3,530,823	75.3	
2016~2018평균	5,425,793	4,755,253	87.7	
2019~2022평균	4,885,867	3,599,898	73.7	

주: 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18세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함

2) 종합소득세 신고자 및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자녀세액공제 신청인원수 합산(단, 이때 근로 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한 인원은 제외)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자녀 수별 대상 인원 수 추정) 자녀세액공제 신청 대상자의 자녀 수별 인원수 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수별 동 개정안 적용 인원수 추정

-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별로 세액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자녀인원수별 통계가 산출되는데, 6세이하 자녀가 모두 포함된 2016~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 신고 인원 중 자녀수 1인, 2인, 3인이상의 비중을 활용하여 대상 인원수를 추정함

[표 5] 자녀세액공제 신청자의 대상 자녀 수별 비중

(단위: %)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소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이상
2016	100.0	45.2	46.0	8.8	100.0	48.9	45.1	5.9
2017	100.0	46.2	45.2	8.7	100.0	49.4	44.6	6.0
2018	100.0	47.4	44.1	8.6	100.0	50.2	43.8	6.0
2019	100.0	53.2	40.5	6.3	100.0	55.4	40.1	4.5
2020	100.0	53.8	39.9	6.3	100.0	56.0	39.4	4.6
2021	100.0	54.3	39.4	6.3	100.0	55.6	39.6	4.8
2022	100.0	54.0	39.4	6.5	100.0	55.2	39.8	5.0
2016~2018평균	100.0	46.2	45.1	8.7	100.0	49.5	44.5	6.0
2019~2022평균	100.0	53.8	39.8	6.4	100.0	55.6	39.7	4.7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향후 5년간 대상 인원수 추정) 향후 5년간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자의 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자료의 증가율을 활용해 추정

- 2022년 기준 유자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청 인원 추정치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중 미혼자녀 있는 가구(가구주 연령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향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가구주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한 후, 해당 가구의 향후 증가율을 사용
 -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2022년 귀속기준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자녀세액공제 신청 인원 대비 신청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60세 이하인 경우의 비중은 각각 98.8%, 96.9%에 달함
- 향후 5년간 과표구간별 인원 비중은 2022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6]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 2023~2029

(단위: 만가구)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미혼자녀 있는 가구 (가구주 연령 30세 ~60세)	650.0 (-1.7)	641.7 (-1.3)	631.5 (-1.6)	621.5 (-1.6)	612.6 (-1.4)	603.0 (-1.6)	590.6 (-2.1)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미혼자녀 있는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합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 2022.10

[표 7] 유자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청 인원 전망, 2023~2029

(단위: 만명)

자녀수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소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이상
2023	114.9	53.1	51.8	10.0	289.3	143.2	128.8	17.3
2024	113.4	52.5	51.1	9.9	285.6	141.4	127.1	17.1
2025	111.6	51.6	50.3	9.7	281.0	139.1	125.1	16.8
2026	109.9	50.8	49.5	9.6	276.6	136.9	123.1	16.5
2027	108.3	50.1	48.8	9.4	272.6	134.9	121.4	16.3
2028	106.6	49.3	48.0	9.3	268.3	132.8	119.5	16.1
2029	104.9	48.5	47.3	9.1	264.1	130.8	117.6	15.8

주: 근로소득세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중복 신고자를 제외한 인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1인당 세수효과 추정

- (종합소득세)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표 등을 활용하여, 자녀수별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자녀세액공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계
 - 다만, 2023년부터 변경된 과표구간 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여 현행 1인당 산출세액도 재추계, 2022년 귀속 1인당 과표에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에서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1인당 결정세액을 추정해 1인당 세수효과 추계
 -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감면액 중 55.9%¹⁾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44.1%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2022년 귀속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1,027.5만명이며, 이 중 12.7%인 124.0만명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함

[표 8]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신고자의 신고현황,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과세표준	신고인원	1인당 종합소득금액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산출세액	1인당 결정세액
합계	1,240,221	64.0	52.6	12.8	10.5
과표 0	67,554	3.5	0.0	0.0	0.0
0~1,400만원	417,322	14.9	6.9	0.4	0.1
1,400~5,000만원	453,470	39.8	27.9	3.1	1.9
5,000~8,800만원	145,994	81.5	65.9	10.5	8.3
8,800만원~1.5억원	79,837	130.1	113.1	24.3	20.3
1.5억원~3억원	47,546	223.6	205.4	57.9	47.6
3~5억원	15,712	400.5	380.9	125.9	104.3
5~10억원	9,082	702.4	679.2	248.2	215.0
10억원 초과	3,704	2,515.2	2,476.3	1,045.8	908.9

자료: 국세청

1)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음

- (근로소득세)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자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1인당 과표 등을 활용하여, 자녀수별로 개정안에 따라 산출된 1인당 세수효과에 각 구간별 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를 추계
-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소득세 신고자(자녀세액공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계
 - 다만, 2023년부터 변경된 과표구간 조정의 효과를 반영하여 현행 1인당 산출세액도 재추계, 2022년 귀속 1인당 과표에 2023년 기준 소득세율을 반영하여 추계
 - 1인당 산출세액에서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을 차감하여 1인당 결정세액을 추정해 1인당 세수효과 추계
 - 1인당 세액공제·감면액 추계시 과표구간별 평균세액공제·감면액 중 54.9%²⁾는 산출세액에 비례해 변동하고, 나머지 45.1%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
 - 참고로 2022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세 신고인원은 2,052.9만명이며, 이 중 13.3%인 273.2만명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함

[표 9] 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신고자의 신고현황,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과세표준	신고인원	1인당 총급여	1인당 과세표준	1인당 산출세액	1인당 결정세액
합계	2,731,739	78.32	48.23	8.70	7.17
0~1,400만원	455,801	29.22	8.18	0.51	0.01
1,400~5,000만원	1,392,278	60.08	30.69	3.54	2.00
5,000~8,800만원	561,134	98.97	64.94	10.37	8.50
8,800만원~1.5억원	240,459	148.12	111.07	23.98	21.79
1.5억원~3억원	66,495	235.45	193.44	54.11	51.38
3~5억원	10,295	425.51	373.79	124.12	120.83
5~10억원	3,999	729.25	664.79	243.81	239.77
10억원 초과	1,278	2260.83	2167.79	910.11	904.10

주: 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신고자 273.2만명 중 추후 종합소득세 중복신고자(44.1만명)를 제외하면 229.1만명임

자료: 국세청

2) 전체 세액공제·감면액 중 산출세액에 연동되는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있음

- (1인당 세수효과) 종합소득세 신고자와 근로소득세 신고자에 대해 자녀 수별로 1인당 세수효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
 -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모두 자녀세액공제 적용자 대상 1인당 과세표준에 자녀 수별 세율 인하의 효과를 반영하여 1인당 세수효과 추계

[표 10] 자녀 수별 기본세율 차등 적용에 따른 1인당 세수효과, 2022년 귀속 기준
(단위: 백만원)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신고자			근로소득세 신고자		
	1인	2인	3인이상	1인	2인	3인이상
자녀수						
합계	-0.85	-1.27	-1.69	-0.83	-1.24	-1.66
과표 0~1,400만원	-0.08	-0.08	-0.08	0.00	0.00	0.00
1,400~5,000만원	-0.43	-0.65	-0.86	-0.46	-0.69	-0.92
5,000~8,800만원	-1.15	-1.73	-2.31	-1.16	-1.74	-2.33
8,800만원~1.5억원	-2.05	-3.07	-4.09	-2.11	-3.16	-4.21
1.5억원~3억원	-3.70	-5.55	-7.40	-3.76	-5.64	-7.52
3~5억원	-6.89	-10.34	-13.78	-7.37	-11.05	-14.73
5~10억원	-12.57	-18.86	-25.15	-13.17	-19.76	-26.35
10억원 초과	-45.91	-68.87	-91.82	-43.20	-64.80	-86.40

주: 각 과표 구간별 평균 1인당 세수효과를 추정, 근로소득세 과표 0~1400만원 구간은 결정세액이 없어 세수효과가 0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세수효과

- (세수효과, 귀속기준) 자녀 수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총 20.30조원(연평균 4.0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 수에 대한 정보가 부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 이를 감안할 경우 세수감소 효과는 본 추정치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음

[표 11] 자녀 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의 세수 효과(귀속연도 기준)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합계	-4.19	-4.12	-4.06	-4.00	-3.93	-20.30	-4.06
종합소득세	-1.32	-1.30	-1.28	-1.26	-1.24	-6.42	-1.28
근로소득세	-2.86	-2.82	-2.78	-2.73	-2.69	-13.88	-2.78

□ (세수효과, 징수기준) 종합소득세 등의 징수 시점을 반영할 경우, 자녀 수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향후 5년간 총 19.05조원(연평균 3.8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개정안이 2025년부터 시행되어, 2025년 귀속소득부터 적용 가정
- 종합소득세는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가 다음연도에 전액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개정('25.2월 가정) 이후 원천징수분이 납부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4월부터 세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표 12] 자녀 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의 세수 효과(징수연도 기준)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세수효과 합계	-2.15	-4.86	-4.08	-4.02	-3.95	-19.05	-3.81
종합소득세	0.00	-1.32	-1.30	-1.28	-1.26	-5.17	-1.03
근로소득세	-2.15	-3.53	-2.78	-2.73	-2.69	-13.88	-2.78

나. 추계결과

□ 자녀 수별로 소득세 기본세율을 차등 적용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5년 2.15조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9.05조원(연평균 3.8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조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자녀수별 소득세 기본세율 차등 적용 (안 제55조제1항)	-2.15	-4.86	-4.08	-4.02	-3.95	-19.05	-3.8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